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28
----------	--------

제출년월일 : 2025.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총 33개 사무)

-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제46조의2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10건)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9건)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법령 개정된 사무(1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1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건)

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총 19개 사무)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처리 사무 삭제(1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에 따른 의료급여증 회수 사무 삭제

○ 근거법령 삭제 및 정비(15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80조 삭제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삭제(2건)
- 「약사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사무 순서 변경(2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규 사무로 인한 사무 순서 변경(9건)

○ 관계 법령과 용어 통일(3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1건,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2건, 농지원부 → 농지대장)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대상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입 사 무 (제5조제1항 관련)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보건소장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1.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나. 기초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동장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장애인단위의뢰 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동장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장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동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 같은 법 제62조	보건소장
	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필수예방접종 나. 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83조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검진 및 역학 조사 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결핵예방접종 등 나.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다. 입원 명령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결핵예방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나. 건강기록부의 관리 다. 보고지시, 출입, 검사 등 라. 시정 명령 마.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청문 바.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사. 과태료 부과 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15조의17 ○ 같은 법 제23조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라. 업무개시 명령 마.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사.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8. 의료지도원의 배치	○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	
	9.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0. 점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나. 시술소의 폐업·휴업신고 처리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업무검사 등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 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청문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의료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4조 ○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11.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시술소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 금지, 시정명령, 청문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33조, 제82조 ○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같은 법 제61조, 제82조 ○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제84조 ○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제84조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등록 수리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 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차. 시정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청문 카.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 같은 법 제21조의2,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2조 ○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6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21조의3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같은 법 제56조	
	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증명서발급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수리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 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지도·감독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 등, 청문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제68조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 다. 지도·점검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다. 의약품도매상 폐업 등 신고수리	○ 「약사법」 제45조제1항 ○ 같은 법 제45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차. 허가증 등의 재교부 카. 과징금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제44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의2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지정 명령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 「의료법」 제63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50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24.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 명령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사용중지명령 등 바.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같은 법 제56조	
	2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승인 바. 출입·검사와 수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 보고 명령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마약류 감시원 임명 타.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51조의5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6.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 「약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신고취소와 업무정지 등 바. 신고증의 재발급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지위승계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2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신고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신고증 재발급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 같은 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6조	
	28.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생략)	(생략)	(생략)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생략)	(생략)	(생략)
복지동행국 (실뽐리복지과)	1.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1. (생략) 2.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생략)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1. (생략)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생략)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생략)	(생략)	(생략)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생략)	(생략)	(생략)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장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장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생략)	(생략)	(생략)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생략)	(생략)	(생략)
보건소	1. ~ 6. (생략)	(생략)	보건소장	보건소	1. ~ 6. (생략)	(생략)	보건소장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아. (생략)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아. (생략)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 (삭제)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삭제)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하. (생략) (신설)	(생략) (신설)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하. (생략) 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생략) ○ 같은 법 제21조의3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신설)	○ 같은 법 제45조 (신설)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다. 의약품도매상 폐업 등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자.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차. 허가증 등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타.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 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 다.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의제2항 (생략)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 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 다.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생략)	
	24. (생략)	(생략)			24. (생략)	(생략)	

	25.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2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설)	(신설)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 같은 법 제7조		
	(신설)	(신설)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		
	(신설)	(신설)		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신설)	(신설)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승인	○ 같은 법 제13조		
	(신설)	(신설)		바.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신설)	(신설)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신설)	(신설)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4조		
	(신설)	(신설)		자. 청문	○ 같은 법 제45조		
	(신설)	(신설)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설)	(신설)		카. 마약류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8조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타.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 같은 법 제51조와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 같은 법 제49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6.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 「약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신설)		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신설)	(신설)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신설)	(신설)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신설)	(신설)		마. 신고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신설)	(신설)		바. 신고증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신설)	(신설)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신설)	(신설)		아. 지위승계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신설)	(신설)		자. 청문	○ 같은 법 제77조		
	(신설)	(신설)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신설)	(신설)					
				27. 의료가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신설)		가. 의료가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신설)	(신설)		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같은 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설)	(신설)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신설)	(신설)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5조의2		
	(신설)	(신설)		마. 신고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신설)	(신설)		바. 신고증 재발급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설)	(신설)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신설)	(신설)		아. 청문	○ 같은 법 제39조		
	(신설)	(신설)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8.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 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새마포담당관 안민환
연 락 처	02-3153-8514